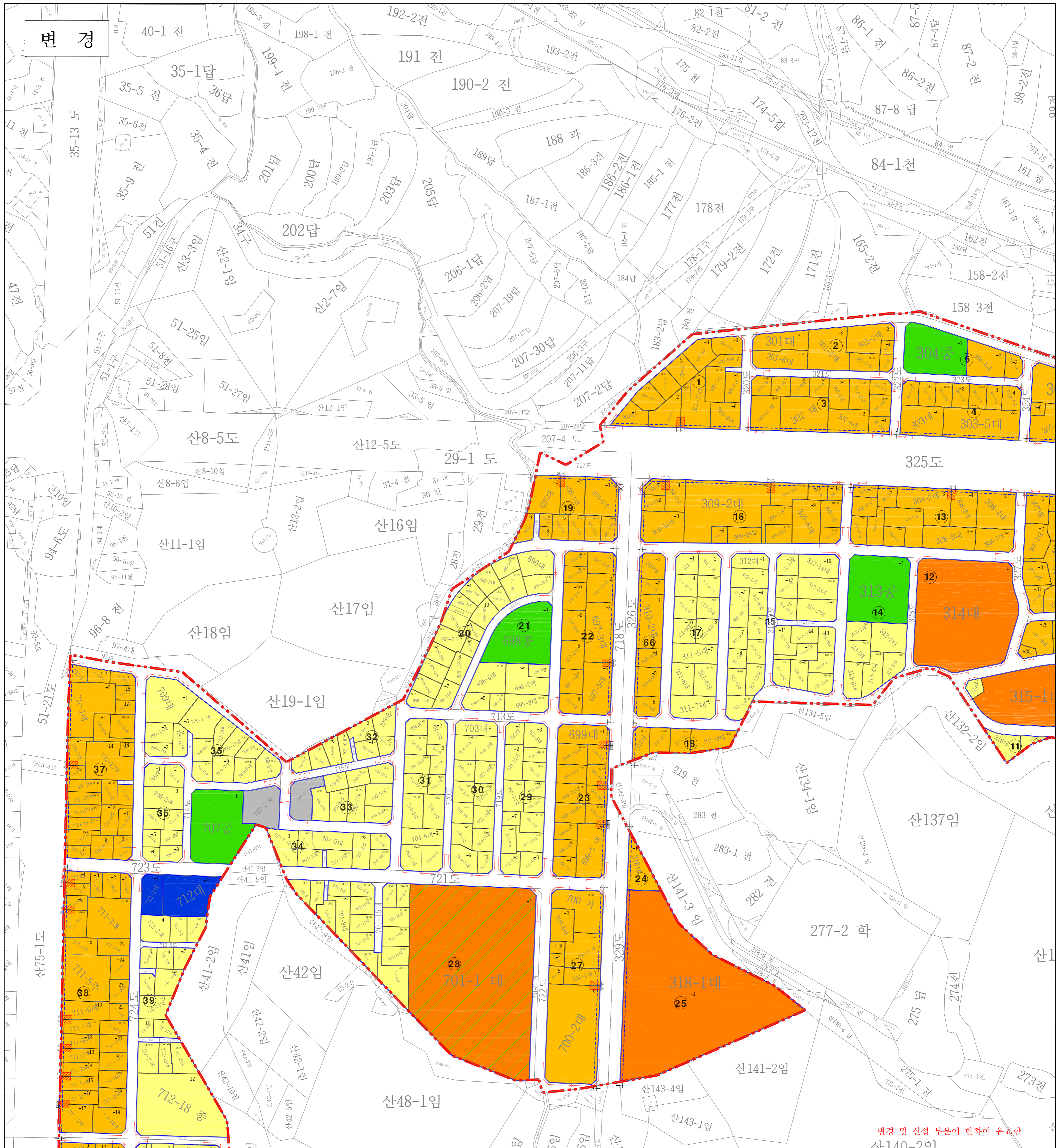


도시관리계획(연희3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

-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-



구 분	작 성 자	입 안 및 결 정 권 자	
		1차확인자	2차확인자
소 속	도화엔지니어링	도시균형계획과	도시균형계획과
직 위	도시계획기술사	-	도시계획담당
직 명	전문이사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사무관
성 명	정현식	나승일	조항만
확인인			

- 범 례 -

	지구단위계획구역		A용도(공동주택 중 아파트)
	가구경계선		A-1용도(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)
	회지경계선		B용도
	가구번호		C용도
	회지번호		공공청사
	건축한계선		의료시설, 노유자시설
	대지분할가능선		공 원
	차량출입불허구간		
	공동주차(권장)		
	공동개발(권장)		

KEY - MAP

Scale : 1 : 1,500

지 정 권 자	인 천 광 역 시 장
지 정 일 자	2018년 12월 31일
고 시 년 도	2018년 12월 31일
고 시 번 호	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-348호
작 성 자	인 천 광 역 시 장
작 성 년 월 일	2018년 12월 31일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	인 천 광 역 시 장